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장문혁)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기획실장)	일 자	질의	2020년 11월 26일
			답변	2020년 11월 27일
회 의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지방교부세 페널티 세부내역(지방세,세외수입,민간보조금,행사·축제경비)

답변내용

- 지방교부세 페널티 세부내역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단위: 백만원)

구분	전전전년도 지방세			전전년도 지방세			반영액
	부과액(a)	징수액(b)	징수율 (A=b/a)	부과액(c)	징수액(d)	징수율 (B=d/c)	
2018년	25,943	24,570	0.9471	29,161	27,715	0.9504	165
2019년	29,161	27,715	0.9504	31,412	29,945	0.9533	156
2020년	31,412	29,945	0.9533	31,593	29,348	0.9289	-1,289

※ (+)가 인센티브, (-)가 페널티.

※ 반영비율(C) = 전전전년도 징수율(A)-전전년도 징수율(B)
 · 2018년(-0.0033), 2019년(-0.0029), 2020년(0.0244)

※ 반영액 = 전전년도 징수액(d)×반영비율(C)×180%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단위: 백만원)

구분	전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액(A)	전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반영 미징수액 C=B-A	반영액 C×180%
		불납결손액 (a)	미징수액 (b)	실제미징수액 B=a+b		
2018년	2,458	542	2,324	2,866	408	-734
2019년	2,324	461	2,239	2,700	376	-676
2020년	2,239	552	3,230	3,782	1,543	-2,778

※ (+)가 인센티브, (-)가 페널티.

□ 경상세외수입 확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액				3년평균 E=(A+B+C)/3	3년평균 F=(B+C+D)/3	반영 비율 G=F/E	반영액
	전전전전년도 (A)	전전전전년도(B)	전전전전년도 (C)	전전전전년도 (D)				
2018년	5,133	4,790	4,948	5,732	4,957	5,157	1.0403	312
2019년	4,790	4,948	5,732	5,751	5,157	5,477	1.0621	510
2020년	4,948	5,732	5,751	5,880	5,477	5,788	1.0567	591

※ (+)가 인센티브, (-)가 페널티.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단위: 백만원)

구분	전전전전년도 미징수액(A)	전전전전년도 미징수액		실제 미징수액 B=c+d	반영 미징수액 C=(B-A)	반영액 C*180%
		불납결손액 (c)	미징수액(d)			
2018년	2,570	753	1,850	2,603	33	-59
2019년	1,850	573	1,613	2,186	336	-606
2020년	1,613	297	1,225	1,522	-91	165

※ (+)가 인센티브, (-)가 페널티.

□ 민간보조금 페널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E) 반영비율 1-(B/A)	반영액
	총 결산액 (a)	지방보조 금결산액 (b)	비중 (A=b/a)	총 결산액 (c)	지방보조 금결산액 (d)	비중 (B=d/c)		
2018년	338,575	39,173	0.116	384,154	50,106	0.130	-0.127	-3,181
2019년	384,154	50,106	0.130	475,332	42,145	0.089	0.320	6,748
2020년	475,332	35,516	0.075	447,894	16,371	0.037	0.511	4,181

※ (+)가 인센티브, (-)가 페널티.

※ 반영액 = 반영비율(E)×전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d)×50%

□ 행사·축제경비 페널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E) 반영비율 1-(B/A)	반영액
	총 결산액 (a)	행사축제성 경비결산액 (b)	비중 (A=b/a)	총 결산액 (c)	행사축제성 경비결산액 (d)	비중 (B=d/c)		
2018년	338,575	5,137	0.015	384,154	6,762	0.018	-0.160	-1,083
2019년	384,154	6,762	0.018	475,332	6,417	0.014	0.233	1,495
2020년	475,332	6,147	0.013	447,894	8,699	0.019	-0.502	-4,366

※ (+)가 인센티브, (-)가 페널티

※ 반영액 = 반영비율(E)×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 결산액(d)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사전행사(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제작 설치 등) 추진을 위한 행사·축제성 경비 증가

[붙임1 산정기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액 산정(20년도 기준)

□ 기준재정수입액

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 ① (전전전년도 지자체 지방세 징수율-전전년도 지자체 지방세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자체 지방세 징수액 × 180%
- ② (전전년도 동종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자체 지방세 징수액

※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하고, "①+②"를 반영한다. 다만,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 ① (전전년도 지자체 지방세 체납누계액-전전전년도 지자체 지방세 체납누계액)×180%
- ※ 지방세 징수액 차감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및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
-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50%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체납징수율-해당 지자체 지방세 체납징수율)×해당 지자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한다. 다만,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 ②는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 경상세외수입 확충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 ①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자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자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자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80%
- ② (전전년도 동종 지자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1/2 단체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자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자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고,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① (전전년도지자체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전전년도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누계액)×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② (동종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1/2 지자체의 평균 체납징수율 - 해당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해당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한다. 다만,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마. 탄력세율 적용 → 인센티브만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이 가능한 탄력세율의 가산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보다 높게 운영하는 경우 표준세율 적용 시 과세총액과의 차액을 해당 단체의 수입액에서 빼주고(인센티브), 표준세율보다 낮게 운영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더해(페널티)주게 된다. 주민세는 법령 상 1만원이 상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페널티로만 적용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가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센티브로만 적용되고 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바. 지방세 감면액 축소

-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times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면액,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및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times 150\%$
- ③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최대 감면율 적용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실제 감면액 *) $\times 1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 감면액은 "①+②-③"의 결과값을 반영한다.

□ 기준재정수요액

가. 인건비 건전 운영(인건비 절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 인센티브만 적용

<인건비 절감>

(1-전전년도 지자체 인건비 결산액÷전전년도 지자체 기준인건비)×지자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 전전년도 지자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분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자치단체 당해연도 전환비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20%

※ 동종 지자체 전환비율(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인원) 평균을 상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본다.

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1-(전전년도 지자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전전년도지자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지자체 전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항목: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다. 업무추진비 절감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1-전전년도 지자체 업무추진비 결산액÷전전년도 지자체 업무추진비 기준액)×지자체 전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라.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1-전전년도 지자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경비 결산액 비중÷전전전년도 지자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경비 결산액 비중)×지자체 전전년도 행사·축제성경비 결산액

※ 행사·축제성경비 항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마.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1-전전년도 지자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지자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지자체 전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50%

※ 지방보조금 항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바. 일자리 창출 → 인센티브만 적용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지자체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지자체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 × 지자체 「노동」, 「평생·직업교육」,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결산액

※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또는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본다.

사. 예산집행 노력(이·불용액 최소화) → 인센티브, 페널티 모두 적용

<불용액 최소화>

(동종 지자체 평균 불용률* - 해당 지자체 불용률) × 해당 지자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자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

<이월액 최소화>

(동종 지자체 평균 이월률* - 해당 지자체 이월률) × 해당 지자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자체 최종 예산현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복구에 산으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미교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보며,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